



# Korean Tax Update Samil Commentary

April 15, 2024

## Table of Contents

### Tax News

- 정부, 주주환원 확대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 정부, CR리츠의 지방 미분양주택 매입시 세제지원 등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발표
- 정부,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확정
- 국세청, 2024년 1분기 국세통계 공개

### 최신 주요 개정 동향

-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353호, 2024. 3. 26.)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365호, 2024. 3. 28.)
- 법인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41호, 2024. 3. 22.)
- 소득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52호, 2024. 3. 2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42호, 2024. 3. 22.)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55호, 2024. 3. 2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49호, 2024. 3. 22.)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1048호, 2024. 3. 22.) 등

### 최신 예규·판례

-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배제 적용시 농특세 비과세 여부
- 기술혁신형 주식 취득 세액공제 취득요건 판단시 유상증자로 인수한 신주의 포함 여부
- 중견기업의 대기업 전환 후 근로자가 수령한 내일채움공제 공제금의 소득세 감면 여부
- 과점주주가 되는 날과 부동산 취득일이 동일한 경우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판단

## Tax News

### 정부, 주주환원 확대 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를 추진 중인 가운데, 3월 19일 자본시장 선진화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고,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라고 밝힘. 이에 따르면 보다 많은 기업들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할 예정임. 또한, 정부는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할 계획임.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경감 방안 등은 추가 의견 수렴과 시뮬레이션을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임

### 정부, CR리츠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세제지원 등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발표

정부는 2024년 3월 28일 LH의 건설사 부실 사업장 토지매입과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에 대한 세제지원 등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함. 정부가 발표한 주요 세제지원 방안에는 LH가 건설사의 부실 사업장 보유 토지를 역경매 방식으로 매입 시 취득세의 25%를 감면(법 개정 전제)하는 방안과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 해소를 위하여 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 시 취득세 중과배제(준공 후 미분양 주택 限) 및 종부세 합산배제하는 지원방안이 포함됨

### 정부,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확정

정부는 2024년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함. 이에 따르면 2024년 예상된 국세감면액은 77.1조 원, 국세감면율은 16.3%로 2023년도 전망치인 국세감면액 69.5조 원과 국세감면율 15.8%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2024년 조세지출 운영 방향은 다음과 같음: (i) R&D와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ii)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국내 생산 기반을 확대하도록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기술 범위의 지속적 보완; (iii) 일자리를 통해 사회 이동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청년·경단녀·장애인 등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iv) 상장기업의 밸류업 지원방안 마련; (v) 서민·취약계층의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제지원 지속 및 (vi)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 신설은 억제하고 조세특례 적용요건을 엄격히 하는 등 국세 감면한도 준수 노력을 강화할 예정임. 기획재정부는 2024년 4월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24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임

## 국세청, 2024년 1분기 국세통계 공개

국세청이 공개한 2024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국세청 세수는 335.7조 원으로 전년 384.2조 원 대비 12.6%(48.5조 원) 감소함. 2023년 세목별 세수는 소득세 115.8조 원(34.5%), 법인세 80.4조 원(23.9%), 부가가치세 73.8조 원(22.0%) 순으로 집계됨. 이 밖에 상속·증여세는 14.6조 원, 교통·에너지·환경세 10.8조 원, 개별소비세 8.8조 원 등으로 집계됨. 총 국세\* 대비 국세청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97.6%로 2022년(97.0%)에 비해 0.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총 국세: 국세청 세수 + 관세 + 관세·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

## 최신 주요 개정 동향

###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353호, 2024. 3. 26.)

#### ■ 개정 이유

-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 산정을 위해 취득 당시의 가액을 지급하는 주체를 납세의무자 및 위탁자 등으로 정하고,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장부와 증거서류를 갖춰 두어야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9860호, 2023. 12. 29. 공포, 2024. 4. 1. 시행)됨에 따라, 비용 지급 주체에 납세의무자의 특수관계인 등을 추가하여 그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고, 법인이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도록 갖춰 두어야 하는 장부와 증거서류를 법인의 주주 변동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변화하는 주택수요에 대응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택공급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향후 2년간(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이 소형 신축 주택을 취득하거나 임대사업자가 소형 주택을 임대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등에는 기준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365호, 2024. 3. 28.)

####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또는 청년도약계좌 등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가입이 제한되는 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나, 직전 과세기간에 해당 소득만 있는 청년의 경우에는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에 가입할 수 있게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군에 복무 중이거나 전역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 법인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41호, 2024. 3. 22.)

####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과세를 합리화하기 위해 그 토지 양도 수익의 익금산입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토지개발사업의 범위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구체화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최근 금리 인상을 반영하여 부동산임대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추계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1천분의 29에서 연 1천분의 35로 상향 조정하고, 각 업계의 금형(金型) 교체 주기를 고려하여 금형에 대한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업종과 상관없이 5년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소득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52호, 2024. 3. 22.)

###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주택의 범위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양도세 중과 배제 대상 소형 신축주택 등의 요건을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일 것으로 구체화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최근 금리 인상 을 반영하여 부동산 대여에 의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1천분의 29에서 연 1천 분의 35로 상향 조정하고, 영세업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등 이월액이 남아 있는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금액 전부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42호, 2024. 3. 22.)

###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추가세액공제와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 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고, 과세특례 저축 가입 신청일 또는 연장 신청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 의 총 급여액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입 요건을 판단하 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추가세액공제 및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식을 정하고, 과세특례 저축 가입을 위한 소득확인증명서 서식을 정비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첨 단전략산업과 미래유망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원천 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군사위성체계·유무인복합체계 제작시설 및 수소환원제철시설 등 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55호, 2024. 3. 22.)

###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의료보건사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의 대상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보건 용역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도록 하는 한편, 연구개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용 재화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49호, 2024. 3. 22.)

###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공익법인 등의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등이 감사인으로부터 감리업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된 것에 맞추어, 감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인의 감사보수의 1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감리업무 수수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관련 서식에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서화·골동품 등을 별도의 재산종류코드로 분류하여 증여재산의 분류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48호, 2024. 3. 22.) 등

### ■ 개정 이유

-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을 차단하기 위해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도입하고, 과세 관련 금융거래 정보의 국가 간 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상호주의에 따른 자동정보교환의 범위를 조정하며, 국외 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신탁을 설정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적용하는 대상 기업의 범위,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을 계산할 때 반영하는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에 관한 세부 기준 및 방법,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국제해운사업 순손익의 계산 방법, 글로벌최저한세정보 신고에 필요한 서식 등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동정보교환 대상이 되는 금융거래의 정보를 정하고, 해외신탁 자료 제출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기타 개정사항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351호, 2024. 3. 26.)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352호, 2024. 3. 26.)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4366호, 2024. 3. 29.)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44호, 2024. 3. 22.)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45호, 2024. 3. 22.)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54호, 2024. 3. 22.)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47호, 2024. 3. 22.)
- 관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57호, 2024. 3. 22.)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53호, 2024. 3. 22.)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58호, 2024. 3. 22.)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56호, 2024. 3. 22.)
- 주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51호, 2024. 3. 22.)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50호, 2024. 3. 22.)
-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74호, 2024. 3. 26.)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72호, 2024. 3. 26.)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73호, 2024. 3. 26.)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63호, 2024. 3. 29.)

## 최신 예규·판례

###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배제 적용 시 농특세 비과세 여부

#### ■ 쟁점사항

- 농특세법은 농특세 과세대상이 되는 '감면'에 대해 지특법 등에 따라 취득세 등이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에 해당하거나 또는 취득세 특례 세율(지법 §15 ①)의 적용에 해당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고(농특세법 §2 ①), 해당 '감면'을 받은 납세의무자는 감면세액에 대해 20%의 농특세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농특세법 §5 ① 1호)
- 이번 결정례의 쟁점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중과세율 배제규정(지특법 §180의 2 ① 2호, 이하 '중과세율 배제')을 적용하여 감소한 취득세에 대해 농특세법상 '감면'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보아 농특세를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임

#### ■ 처분청 주장

- 이에 대해 유권해석은 중과세율 배제를 '감면'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10, 2022. 10. 18.), 처분청은 지특법상 감면규정의 중복 배제규정(구 지특법 §180, 2023. 3. 14. 개정 전)을 적용함에 있어 중과세율 배제를 '감면'으로 해석한 대법원 판결(대법2022두 66125, 2023. 3. 16.)을 이유로 농특세법상으로도 중과세율 배제를 '감면'으로 보아 중과세율 배제로 감소한 취득세에 대해 농특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임

#### ■ 결정요지

- 그러나, 심판원은 농특세법에서 중과세율 배제를 농특세 과세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전술한 바와 같이 유권해석에서 중과세율 배제를 농특세 비과세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중과세율 배제는 농특세 과세대상인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조심2023지5596, 2024. 3. 14. 외), 이는 처분청의 주장과 달리 중과세율 배제를 '감면'으로 해석한 전술한 대법원 판결은 지특법상 중복 배제규정에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음

#### ■ 시사점

- 즉, 이번 심판례는 지특법상 감면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와 농특세법상 농특세 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중과세율 배제가 '감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각각 불일치함을 시사하므로, 부동산투자회사(REITs)·집합투자재산(REF)·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등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중과세율 배제를 적용한 경우에는 지특법상으로는 '감면'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보아 다른 감면규정과의 중복 적용이 금지되는 반면, 농특세법상으로는 '감면' 규정이 아니므로 중과세율 배제로 인해 감소한 취득세에 대해 농특세는 부담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기술혁신형 주식 취득 세액공제 취득요건 판단 시 유상증자로 인수한 신주의 포함 여부

### ■ 쟁점사항

-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은 내국법인(이하 '인수법인')이 벤처기업 등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피인수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 상당액을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조특법 §12의 4, 이하 '쟁점 세액공제'), 쟁점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수법인이 취득한 주식이 피인수법인 지분의 50%(경영권 지배시 30%)를 초과해야 한다는 '주식취득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조특법 §12의 4 ① 2호)
- ▣ 이번 유권해석의 쟁점은 인수법인이 같은 날 구주 매입(12%)과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 인수(43%)를 통해 피인수법인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유상증자로 인수한 신주를 포함한 지분이 50%를 초과하여 주식취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쟁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임

### ■ 회신요지

- ▣ 이번 유권해석은 쟁점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주식취득 요건 판단시 유상증자로 인수한 신주는 제외된다 는 입장으로, 이는 피인수법인의 주주가 주식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 말까지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가 아닐 것을 공제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구 조특법 §12의 4 ① 4호), 이는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주가 보유한 기존 구주의 취득을 전제로 쟁점 세액공제를 적용함을 의미하는 점, 쟁점 세액공제는 벤처 창업자 등의 투자금 회수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벤처 창업자 등의 기존 구주가 아닌 피인수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신주는 쟁점 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이 고려된 해석으로 판단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 2024. 1. 22, 서면-2023-법규법인-0683, 2024. 1. 24.)

### ■ 시사점

- ▣ 따라서, 이번 유권해석에 따르면, 벤처기업 등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기업의 쟁점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식취득 요건, 즉 인수법인이 취득한 주식이 피인수법인 지분의 50%(경영권 지배시 30%)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인수법인이 취득한 주식 중 피인수법인의 기존 주주로부터 매입한 구주만을 포함하고 피인수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라 인수한 신주는 제외하여 쟁점 세액공제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중견기업의 대기업 전환 후 근로자가 수령한 내일채움공제 공제금의 소득세 감면 여부

### ■ 쟁점사항

- ▣ 조특법은 중소·중견기업과 해당 기업의 근로자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근로자가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가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업납입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감면(30% ~ 90%)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지원하고 있음 (조특법 §29의 6)
- ▣ 이번 유권해석의 쟁점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공제금을 적립할 당시에는 중견기업에 해당했으나 근로자가 공제금을 수령하는 시점에는 대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대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수령한 공제금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임

### ■ 회신요지

- ▣ 이번 유권해석은 중견기업 근로자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공제금을 적립하던 중 소속 기업이 대기업으로 변경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수령하는 공제금은 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회신하고 있음 (사전-2023-법규소득-0723, 2024. 3. 14.)

### ■ 시사점

- ▣ 이번 유권해석은 내일채움공제 공제금에 대해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중소·중견기업 여부의 판정은 공제금 수령시점이 아니라 공제사업 가입시점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는 내일채움공제 감면규정의 문언이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중소·중견기업의 판정시점을 공제사업 가입시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중소·중견기업이 공제금 불입기간 중 대기업으로 성장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감면혜택을 배제한다면 중소·중견기업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려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이 고려된 해석으로 판단됨
- ▣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공제금을 불입하던 중 대기업으로 전환되었다는 이유로 대기업 소속 근로자가 수령한 만기공제금에 대해 소득세 감면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한편, 내일채움공제 소득세 감면규정과 유사하게 중소기업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규정(조특법 §30)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취업 당시 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 적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유권해석의 일관된 입장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866, 2021. 12. 23. 외 다수)

## 과점주주가 되는 날과 부동산 취득일이 동일한 경우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판단

### ■ 쟁점사항

-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를 말하고(지기법 §34 1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지기법 §46 2호)가 되었을 때’에는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지법 §7 ⑤), 이번 유권해석의 쟁점은 과점주주가 되는 날과 부동산 취득일이 동일한 경우 과점주주가 부동산 취득에 따른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임

### ■ 회신요지

- 이에 대해 유권해석은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와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라는 규정에서의 ‘때’라는 단어는 단순한 ‘일자’를 넘어 특정 ‘시각’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보이고, 과점주주가 된 시기와 과세물건을 취득한 시기의 선후관계에 따라 취득세 부담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므로(서울고법 2010누37874, 2011. 9. 7.), 과점주주 지위가 먼저 성립된 후 주식발행법인의 부동산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점주주의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음 (부동산세제과-681, 2024. 2. 20. 외)

### ■ 시사점

- 과거 유권해석과 심판례 등은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일과 주식발행법인의 부동산 취득일이 동일한 경우,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와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를 특정 ‘시각’에 따른 선후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일자’에 취득했다는 이유로 과점주주가 주식발행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도록 해석하였으나(세정13407-206, 2001. 8. 10, 조심2009지0960, 2010. 2. 2, 감심2002-0068, 2002. 5. 7.), 이번 유권해석을 비롯한 최근 유권해석은 취득일이 동일하더라도 특정 ‘시각’을 기준으로 과점주주 지위가 먼저 성립된 후 주식발행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음 (부동산세제과-2064, 2021. 7. 29.)
- 따라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거나 또는 과점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한 날과 주식 발행법인이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날이 동일하더라도, 주식발행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시각 보다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한 시각이 선행되는 경우에는 주식발행법인이 취득한 해당 부동산에 대해 과점주주는 간주취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최근 유권해석의 입장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본 최신 예규·판례 내용은 유권해석과 판례에 대한 이해를 돋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Tax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Easy View for Tax

Easy View for Tax(China)는 중국 세무 내용을  
한국 세법관점에서 세무신고·납부 정보 등을  
직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정기구독 서비스입니다.



# Contacts

## 조 한 철 Partner

han-chul.cho@pwc.com  
02-3781-2577

## 정 재 훈 Partner

jae-hoon\_3.jung@pwc.com  
02-709-0296

## 김 태 훈 Partner

taehoon.kim@pwc.com  
02-3781-2348

## 공 성 덕 Director

seongdeok.kong@pwc.com  
02-709-7056

## 조 영 현 Director

young-hyun.jo@pwc.com  
02-3781-9238

## 이 민 재 Director

min-jae\_1.lee@pwc.com  
02-709-8320

삼일회계법인 뉴스레터는 삼일회계법인의 고객을 위한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배포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문제나 세무이슈 등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삼일회계법인의 뉴스레터에 담긴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십시오.

Samil PwC newsletter has been prepared for the provision of general information and knowledge for clients of Samil PwC, and does not include the opinion of Samil PwC on any particular accounting or tax issues. If you need further information or discussion concerning the content contained in the Samil PwC newsletter, please consult with relevant experts. If you don't want to receive this mail anymore, click here [unsubscription](#).

© 2024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